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73 |
|----------|------|

발의연월일 : 2008. 11. 18.

발의자 : 김성조 · 신상진 · 서상기  
이한구 · 조진형 · 권경석  
허 천 · 이낙연 · 우윤근  
노영민 · 장윤석 · 정희수  
양정례 · 김충조 · 허태열  
이한성 · 강석호 · 구본철  
정의화 · 정갑윤 · 김일윤  
김학송 · 안상수 · 이성현  
이인기 · 김태환 · 김동성  
백성운 · 정하균 · 박준선  
홍사덕 의원(31인)

### 제안이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60세 이상인 자로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습근로자 및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비용을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여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의결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마.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외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마련함(안 제12조 신설).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종류별”을 각각 “종류별, 지역별”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0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최저임금 금액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숙식비용의 평가 및 공제 등)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의 가액은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의 공제한도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공제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6조제8항제2호 중 “낮춘”을 “낮추거나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 또는 재의결하지 못한 경우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위원으로 하여금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안의 의결은 재적공익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중 “노동부”를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종류별”을 “종류별, 지역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3명
2. 사용자위원 3명

### 3. 공익위원 3명

- ③ 중앙위원회에 2명과 지방위원회에 1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제3호, 제5조의3 및 제6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u>종류별</u> 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br>-----<br>-----<br>-----<br>----- <u>종류별, 지역별</u> -----<br>-----.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u>종류별</u>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② ----- <u>종류별, 지역별</u> 구분-----<br>-----<br>-----.                                              |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략)                                                                                                | 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br>-----<br>-----<br>-----<br>-----<br>-----.                                           |
|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u>3개월</u> 이내인 자                                                                   | 1. -----<br>----- <u>6개월</u> -----<br>-----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                                                                                                                                                                                                                                                                                                                                                                                                                                                                                                                           |
|------------------------------------------------------------------------------------------------------------------------------------------|---------------------------------------------------------------------------------------------------------------------------------------------------------------------------------------------------------------------------------------------------------------------------------------------------------------------------------------------------------------------------------------------------------------------------------------------------------------------------------------------------------------------------|
| <p><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u>&lt;신 설&gt;</u></p>                                                                       | <p><u>3. 60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이</u><br/><u>최저임금 감액에 명시적으로</u><br/><u>동의한 자</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3(숙식비용의 평가 및 공</u><br/><u>제 등)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u><br/><u>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를</u><br/><u>제공하는 비용은 해당 근로자</u><br/><u>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제</u><br/><u>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의 가액</u><br/><u>은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u><br/><u>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비</u><br/><u>용의 공제한도는 주 40시간 기</u><br/><u>준 최저임금액의 일정비율 이</u><br/><u>내로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과</u><br/><u>공제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u><br/><u>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
| <p>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⑦<br/>(생 략)</p> <p>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br/>임하여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br/>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p> | <p>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⑦<br/>(현행과 같음)</p> <p>⑧ -----<br/>-----<br/>-----.</p> <p>1. (현행과 같음)</p> <p>2. -----</p>                                                                                                                                                                                                                                                                                                                                                                                                            |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  
춘 행위

⑨ (생 략)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  
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  
-----낮  
추거나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는-----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최저  
임금안을 의결 또는 재의결하  
지 못한 경우 제14조제1항제3  
호에 따른 공익위원으로 하여  
금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  
록 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안의 의결은 재적공익  
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  
-----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이하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  
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4. (생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 ⑥ (생략)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같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종류  
별, 지역별-----

3.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  
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최저  
임금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3명
2. 사용자위원 3명
3. 공익위원 3명

③ 중앙위원회에 2명과 지방위  
원회에 1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17조(회의) ① -----  
-----  
-----.

|                                                                |                                                                                         |
|----------------------------------------------------------------|-----------------------------------------------------------------------------------------|
|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② ~ ④ (생략)</p> | <p>1. ~ 3. (현행과 같음)</p> <p><u>4.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지역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지역별 최저임금위원회 비용추계가 2006년 기준 9억3천만원으로 향후 5년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김성조 의원실 신은동 비서관 (788-2928)

[참고자료]

## 2006년 기준 지역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비용

| 시 도 별 | 종사자수(명)    | 추계액(백만원) |     |     |
|-------|------------|----------|-----|-----|
|       |            | 계        | 인건비 | 경비  |
| 서울특별시 | 3,192,144  | 250      | 180 | 70  |
| 부산광역시 | 866,494    | 68       | 49  | 19  |
| 대구광역시 | 527,169    | 41       | 30  | 12  |
| 인천광역시 | 570,921    | 45       | 32  | 13  |
| 광주광역시 | 335,019    | 26       | 19  | 7   |
| 대전광역시 | 302,658    | 24       | 17  | 7   |
| 울산광역시 | 314,407    | 25       | 18  | 7   |
| 경기도   | 2,536,902  | 199      | 143 | 56  |
| 강원도   | 286,069    | 22       | 16  | 6   |
| 충청북도  | 337,254    | 26       | 19  | 7   |
| 충청남도  | 444,325    | 35       | 25  | 10  |
| 전라북도  | 334,133    | 26       | 19  | 7   |
| 전라남도  | 331,089    | 26       | 19  | 7   |
| 경상북도  | 591,556    | 46       | 33  | 13  |
| 경상남도  | 778,543    | 61       | 44  | 17  |
| 제주도   | 120,810    | 9        | 7   | 3   |
| 계     | 11,869,493 | 930      | 669 | 260 |

※ 사업체노동실태현황(노동부, 근로기준국 2006)